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 계산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,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기본계획 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·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년도 추진 성과
 2.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
 3.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
 4. 주요 사업별 추진 체계 및 투자계획
 5.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시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(이하 “분류체계”라 한다)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「통계법」 제22조제2항 단서를 따른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난안

전산업 분야의 국제동향, 신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) ① 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, 매출액, 종사자 수 등 일반현황
2.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또는 관련 연구개발 현황
3. 재난안전산업 해외시장 진출 동향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,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6조(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재난안전산업 우수 제품과 기술, 산업육성, 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

의 수집 및 제공

2. 재난안전산업 공급자와 수요자 정보수집 및 매칭 서비스의 제공

3. 재난안전제품 인증, 재난안전신기술 지정,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
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장 및 민간 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

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“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재난안전산업의 이해
2.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
3. 재난안전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2항에 해당하는

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조(경비의 지원)

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
2.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

3.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

4.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

제9조(양성기관 지정취소 등)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 지정취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양성기관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(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(이하 “진흥시설”이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,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의

신청을 받았거나 진흥시설을 조성하려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재난안전사업자 5인 이상이 입주할 것
 2.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
 3. 재난안전사업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
 4.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물을 설치할 것
 5. 기존 진흥시설과의 차별성 및 재난안전산업 유관 기업·기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
 6. 효율적인 진흥시설 운영을 위해 조직구성·재원조달·장비활용·시설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
-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한 진흥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

제11조(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이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

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진흥시설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해당 진흥시설과 관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,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및 관리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(이하 “진흥단지”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단지 조성계획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진흥단지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
2. 진흥단지에 입주할 재난안전산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
3.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개발·연구시설 등에 관한 사항
4. 재난안전산업 관련 인력양성기관, 대학,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

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진흥단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진흥단지의 지역 간 균형 배치

2. 기존 진흥단지와의 성격·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

3. 지역의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

4. 진흥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단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조성 요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13조(재난안전신기술 지정 기준)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(이하 “신기술”이라 한다) 지정의 대상기술은 재난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,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규성: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

2. 기술성능의 우수성: 효율성·완성도·중요도·발전성이 있는 기술

제14조(신기술 지정 절차 및 방법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제13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9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현장조사(기술의 내용, 현장 적용성 등이 신기술 지정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, 평가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5조(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신기술 지정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
2. 신기술 적용 당시와 그 이후를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
3.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방재효과, 경제성, 안전성, 유지관리의 편의성, 기술 개량·개선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

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6조(신기술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실을 신기술을 지정받은

자에게 통보하고,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신기술 지정 취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(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대상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
2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
3. 그 밖에 국민이 사용·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8조(인증 기준)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(이하 “인증기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

2.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,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

② 제1항 따른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9조(인증 절차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, 제18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하고,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·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,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, 방법, 비용, 검사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0조(인증 취소 절차 및 방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

따라 인증제품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인증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1조 (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)

① 법 제19조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공사나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(창업 지원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창업에 필요한 법률, 세무, 회계, 경영 등의 컨설팅

2. 창업기술,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

3.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

4. 제10조에 따른 진흥시설 내 창업을 위한 공간의 지원

5.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,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「중소기업 창업 지원법」 제2조를 준용한다.

제23조(사업화 지원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국내·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
2.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

3.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

4.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,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

기업 중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으로 한다.

제24조(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다음 해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
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

② 제1항의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요청받은 기관·단체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종합·분석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분석결

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 조사 결과의 활용 실적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.

제25조(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등)

① 재난안전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사업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.

②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자격, 가입·탈퇴,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6.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
7. 회비에 관한 사항
8. 총회에 관한 사항

9. 재정·회계 등 자산에 관한 사항
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11.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제26조(업무의 위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, 전문성을 갖춘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기관 등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③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(半期)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등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81조의3를 삭제하고, 제88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8조제5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”를 “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8조제6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”를 “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별표 2의3을 삭제한다.

별표 2의4를 삭제한다.

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, 제47조, 제48조, 제49조, 제50조, 제51조, 제52조, 제52조의2, 제52조의3을 삭제한다.

■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령 [별표 1]

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1. 교육과정

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·운영할 것

2. 교육훈련 시설 및 설비

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

가.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

나.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되어 있을 것

다. 교육훈련시설 내에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

라. 가목의 시설 및 설비는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전용(專用)으로 사용할 것

3. 전문교수요원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교수요원으로 확보할 것

가. 재난안전산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강의 경험이 있는 자

나.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

다. 가목 또는 나목과 동등한 수준에 준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보유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4.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

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운영계획과 그 추진 실적이 적절할 것

5. 운영조직 및 예산

가. 교육훈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, 교육훈련과정 및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인력을 상시(常侍) 고용하고 있을 것

나.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

비고 : 항목별 세부지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- 다. 처분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2호	시정권고	시정권고	지정취소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3호	시정권고	시정권고	지정취소